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과 관련한 새로운 조치

## 현상·대응방침

-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입국 절차에 필요한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이하 '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 ◎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인정증명서 유효기간 추가 연장조치를 강구**하기로 하고 (아래의 '새로운 조치' 참조), 2022년 8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체류자격인정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개월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 ※ 인정증명서는 발급시점 상륙을 위한 조건의 적합성 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인정증명서 발급시의 상황과 입국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치 이후 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추가 연장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앞선 신청내용에서 변경 없이 2023년 1월 31일까지 인정증명서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발급완료 인정증명서 (원본 또는 복사본) 및 ②관련 기관에서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새로운 인정증명서로 발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일본어\)](#), 혹은 [여기 \(영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조치

### 새로운 조치

①대상이 되는 체류 자격  
체류자격인정증명서 대상이 되는 모든 체류자격

①대상이 되는 체류 자격  
체류자격인정증명서 대상이 되는 모든 체류자격

②대상 지역  
모든 국가·지역

②대상 지역  
모든 국가·지역

③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것

③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것

④유효로 인정되는 기간

④유효로 인정되는 기간

-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2년 1월 31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 작성일이 2022년 2월 1일~2022년 7월 31일  
\*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2년 4월 30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 **작성일이 2022년 5월 1일~2022년 7월 31일**  
\*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⑤유효로 인정받는 조건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시 관련기관 등이 '계속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활동 내용대로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참고양식 <별표 제1의 체류자격 \(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등\) 용>](#)

[참고양식 <별표 제2의 체류자격 \(예: 일본인 배우자 등, 정주자 등\) 용>](#)

※비자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상기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유효로 인정받는 조건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시, 관련기관 등이 '계속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활동 내용대로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참고양식 <별표 제1의 체류자격 \(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등\) 용>](#)

[참고양식 <별표 제2의 체류자격 \(예: 일본인 배우자 등, 정주자 등\) 용>](#)

※비자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상기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